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
번호 16291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2.

발의자 : 서삼석 · 김현권 · 황희

송기현 · 최운열 · 윤영일

전현희 · 김철민 · 위성곤

어기구 · 송갑석 · 이찬열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,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,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 마련 등 농어촌의 당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」는 매년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점검·평가 및 심의·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러나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」의 점검·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

고 있고,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.

또한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」의 운영이 서면회의 중심으로 개최됨으로 인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.

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 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의료·교육 등 기초 생활서비스가 부족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 심화 및 이에 따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증가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장이 제출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 실시(안 제9조제2항 신설)

- 나. 위원회가 점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제반조치를 시행(안 제9조제5항)
- 다.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,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·평가 결과, 당해 연도 시행계획, 삶의 질 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,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도 등으로 명확화(안 제10조제2항)
- 라.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예산의 배분·조정과 관련하여 관련 절차를 규정(안 제11조의2)
- 마. 기본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 결과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,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를 명확화(안 제42조제2항)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
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추진실적에
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가 제2항에서 점검·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
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
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총괄·조정하고, 기본계획을 심의하며, 그 추진실적
을 점검·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”를 “총괄·조정하기 위
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
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
2.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·평가 결과

3. 당해 연도 시행계획

4.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(이하 “삶의 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
5.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

6.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예산의 배분·조정 등) ① 삶의 질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삶의 질 관련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국가재정법」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 중 삶의 질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,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

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삶의 질 관련 예산 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삶의 질 관련 사업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삶의 질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위원회의 목표 및 추진방향
2. 삶의 질 관련 분야별·사업별 투자우선순위
3. 삶의 질 관련 예산의 배분방향 및 시행계획상의 주요 삶의 질 관련 사업의 배분·조정 내역
4.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삶의 질 관련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
5. 삶의 질 관련 대형사업의 투자적정성, 중점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

6. 다수 부처 관련 삶의 질 관련 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

7. 그 밖에 삶의 질 관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
한 사항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
고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
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3월 31일까지,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
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를
“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
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 결과, 해당 연도
시행계획,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
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기본계획 등의 평가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9조(기본계획 등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u> <u>⑤ 위원회가 제2항에서 점검·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</u>
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,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<u>총괄·조정하고, 기본계획을 심의하며, 그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</u>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	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총괄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</u> ----- -----

지역개발 위원회를 둔다.

<신 설>

-----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
2.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
에 대한 점검·평가 결과
3. 당해 연도 시행계획
4.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(이하 “삶의 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
5.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

6.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② ~ ⑧ (생략)

③ ~ ⑨ (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

<신 설>

제11조의2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예산의 배분·조정 등)

① 삶의 질에 관련된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

다음 연도 삶의 질 관련 사업
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
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
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
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「국가재정법」 제28조에 따라
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
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
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
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
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삶의
질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
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
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
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
촌 지역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
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하
고,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
정책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
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
알려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
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제1항에
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
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
중 삶의 질 관련 예산 요구서
를 매년 5월 31일까지 농림축
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
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
지역개발 위원회 실무위원회의
검토를 거쳐 제1항·제2항 및
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
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삶의
질 관련 사업 투자 우선순위에
대한 의견과 삶의 질 관련 중
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
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
의 추진실적 및 제9조에 따른
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
과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
사항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심
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
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
알려야 한다.

1. 위원회의 목표 및 추진방향

<p>제4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) ① 정부는 기본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<u>3월 31</u></p>	<p><u>2. 삶의 질 관련 분야별·사업별 투자우선순위</u> <u>3. 삶의 질 관련 예산의 배분방향 및 시행계획상의 주요 삶의 질 관련 사업의 배분·조정 내역</u> <u>4.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삶의 질 관련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</u> <u>5. 삶의 질 관련 대형사업의 투자적정성, 중점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</u> <u>6. 다수 부처 관련 삶의 질 관련 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</u> <u>7. 그 밖에 삶의 질 관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</u> <u>제4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) ① -----3월 31</u> </p>
---	--

<p><u>일까지,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 결과, 해당 연도 시행계획, 전년도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을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</p>
<p><u>② (생략)</u></p>	